

청 양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181호 2018. 08. 01.



회 람							
--------	--	--	--	--	--	--	--

발행 청 양 군 (편집 기획감사실 ☎041-940-2020)

조 례

○제2231호 청양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2232호 청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3
○제2233호 청양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6
○제2234호 청양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8
○제2235호 청양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2
○제2236호 청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17
○제2237호 청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4
○제2238호 청양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26
○제2239호 청양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31
○제2240호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9
○제2241호 청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41
○제2242호 청양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3
○제2243호 청양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48
○제2244호 청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8
○제2245호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61
○제2246호 청양군석탄회지역발전기금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82
○제2247호 청양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84
○제2248호 청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8
○제2249호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91
○제2250호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101
○제2251호 청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103
○제2252호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114
○제2253호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116
○제2254호 청양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122
○제2255호 청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1
○제2256호 청양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4
○제2257호 청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136
○제2258호 청양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8
○제2259호 청양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1
○제2260호 청양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4
○제2261호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146
○제2262호 청양군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8
○제2263호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	151
○제2264호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4

규 칙

- 제1206호 청양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56
- 제1207호 청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58
- 제1208호 청양군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급수 시설 조례 시행규칙 161
- 제1209호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176
- 제1210호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92
- 제1211호 청양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194
- 제1212호 청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195
- 제1213호 청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51
- 제1214호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256
- 제1215호 청양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58
- 제1216호 청양군 귀농인·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63

훈 령

- 제290호 청양군행정자료실설치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 274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8월 1일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청양군 조례 제2231호

청양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양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청양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으로, “청양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청양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청양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청양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위원 : 기획감사실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도시과장
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
- 가.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민자유치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민자유치시설사업”을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민자유치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한다.

제7조 중 “민자유치사업”을 각각 “민간투자사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8월 1일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청양군 조례 제2232호

청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청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를 “제33조에 따라 청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군수는 법 제39조의 제9항”을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9항”으로, “청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청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2조에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감사실장, 건설도시과장
2. 위촉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3조제2항 중 “**사고가 있**” 을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 을 “**각 호의 사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지방재정계획**” 을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그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임시회의**” 를 “**임시 회의**”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립시 개최하고**” 를 “**수립 시 열고**” 로, “**개최한다**” 를 “**연다**” 로 한다.

제6조 제목 “**(안전 배부등)**” 을 “**(안전 배부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1주일전에 당해**” 를 “**1주일 전에**” 로, “**송부하여 사**

전에” 를 “배부하여” 로, “이루어 지도록” 을 “이루어지도록” 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에는” 을 “경우는” 으로 한다.

제8조 중 “비치하여야” 를 “갖춰 두어야” 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를 “위원회” 로 한다.

제10조 중 “관하여 필요” 를 “필요”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8월 1일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청양군 조례 제2233호

청양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양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청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청양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청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군수는 법 제60조”를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재정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60조”로, “설치한다. (수정 2015.12.14)”를 “설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한다. (수정 2015.12.14)”를 “본다.”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및 동법시행령 제68조”를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임시회의”를 “임시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최하고”를 “열고”로, “개최할”을 “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를 “위원에게 미리 보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는”으로 한다.

제6조 중 “청취할”을 “들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위원회”로,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8월 1일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청양군 조례 제2234호

청양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양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청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이하 “법”이라 한다)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를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로, “청양군식품진흥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청양군 식품진흥기금”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의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2조제3호 중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을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으로, “운영등에 소요되는”을 “운영 등에 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금융기관에”를 “금융기관에게”로 한다.

제3조제1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82조 및 제83조 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제3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제3조제4호 중 “영”을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를 “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를 “영양관리”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첨부하여야”를 “붙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금운용 계획수립시”를 “기금운용계획수립 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를 “명확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관리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기금수입징수관: 민원봉사실장
2. 기금재무관: 민원봉사실장

3. 기금지출원: 민원봉사실 위생팀장

4. 기금출납공무원: 민원봉사실 위생팀장

제6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청양군재무회계규칙」**”을 “**「청양군 재무회계 규칙」**”으로,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을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은**”을 “**위원회의 위원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사람이 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민원봉사실장**”을 “**당연직 위원: 민원봉사실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식품위생에**”를 “**위촉위원: 식품위생에**”로,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을 “**사람 또는 식품위생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민원봉사실 위생팀장으로 한다.

제6조의5 제목 “**(위원의 해촉 등)**”을 “**(위원의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을 “**어느 하나**”로, “**중 이라도**”를 “**중이라도**”로, “**해촉할**”을 “**위촉 해제할**”로 한다.

제6조의6제1항 중 “**개최하고**”를 “**열고**”로, “**개최한다**”를 “**연다**”로 한다.

제7조 중 “**군내**”를 “**청양군내**”로,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을 “**모범음식점 육성**”

자금”으로 한다.

제8조 중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을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으로, “구비하여”를 “갖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금융기관에 용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를 “금융기관에게 용자에 드는 자금을 빌려 주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여시”를 “대여 시”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수립하여야”를 “세워야”로, “이내에”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매 회계연도”를 “회계연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8월 1일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청양군 조례 제2235호

청양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양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를 “청양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복지회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회관의”를 “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소재지”를 “있는 곳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있는
곳”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군수”를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회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4조 제목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위원장은 읍장·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은 관계 기관 대표, 이장,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관 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 결정
2. 회관의 효율적 활용 방안 강구
3. 회관의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장이 당해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해당 단체의 대표자격을 잃은 때
2.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때
3. 위원직 사퇴를 희망할 때
4.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제1항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해당 읍·면의 주민복지팀장 및 맞춤형복지팀장이 된다.

제9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간사는 회의진행상황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실비변상) 위원에게는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른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제4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경로당

4. 보육시설

7. 이용실·미용실

제11조제1항제8호 중 “**운영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읍·면장**”을 “**읍장·면장**”으로, “**검한다**”를 “**검임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읍·면장**”을 “**읍장·면장**”으로, “**1개월전에 수립하여야**”를 “**1개월 전에 세워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계관리**”를 “**회계 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읍·면장**”을 “**읍장·면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범위내**”를 “**범위 내**”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범위내**”를 “**범위**”로,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설용도내**”를 “**시설용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사용허가시**”를 “**사용허가 시**”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등에는**”을 “**등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제5조**”를 “**제16조**”로, “**언어 년도개시 30일전**”을 “**받아 년도 개시 30일 전**”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교부한다**”를 “**발급한다**”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반환할**”을 “**되돌려줄**”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2조 중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사용기간중**”을 “**사용기간 중**”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중 “**읍·면장**”을 “**읍장·면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전에**”를 “**미리**”로, “**언어야**”를 “**받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시설개선**”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읍·면장**”을 “**읍장·면장**”으로, “**년2회**”를 “**년 2회**”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

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

명 칭	위 치
정산면 복지회관	청양군 정산면 서정4길 45
청남면 복지회관	청양군 청남면 명덕로 221
장평면 복지회관	청양군 장평면 닭우리고개길 42
남양면 복지회관	청양군 남양면 금천1길 7
화성면 복지회관	청양군 화성면 무한로 149
비봉면 복지회관	청양군 비봉면 은골길 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8월 1일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청양군 조례 제2236호

청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여함”을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군수”를 “청양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중 “영유아보육법”을 “「영유아보육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및 부위원장 각”을 “1명과 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의 각호”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각 호”로, “임명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를 “임명한다”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보궐위원”을 “새로 위촉된 위원”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위촉해제)”를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해제”를 “위촉 해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8조제4호 중 “장기간”을 “오랫동안”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3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을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한다.

제14조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를

“군수가 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어린이집의 수요와 공공성을 감안하여 법 제12조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공립어린이집”을 각각 “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국공립어린이집”을 각각 “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공립보육시설위탁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을 “공립어린이집위탁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보육시설장”을 “어린이집원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9조 후단 중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2”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 운영위탁 계약(별지 제2호 서식)”을 “어린이집 운영위탁 계약(별지 제2호서식)”으로, “보육시설위탁계약증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교부한다”를 “어린이집위탁계약증서(별지 제3호서식)를 발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탁운영기간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를 “위탁운영기간은 시행규칙 제24조의2”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준수하여야”를 “지켜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보육시설운영”을 “어린이집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만료된”을 “끝난”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사전에”를 “미리”로, “언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시행규칙 제25조 각호”를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육시설위탁 계약해지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어린이집위탁 계약해지 신청서(별지제4호서식)”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내에”를 “이 내”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보육시설 운영관리에 소요되는”을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를 “영 제24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개·보수비”를 “개수·보수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교재·교구비”를 “교재비·교구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급·간식비용”을 “급식·간식비용”으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부”를 “지급 받은”으로 한다.

제28조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별표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서식 제목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서식 중 “보육시설위탁계약증서”를 “어린이집위탁계약증서”로 한다.

별지서식 제목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별지서식 중 “보육시설위탁계약해지신청서”를 “어린이집위탁계약해지신청서”로 한다.

별지서식 제목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립어린이집 위탁신청서

신청인	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법인·단체명
	주 소	(전 화)
	생년월일	
보육시설의 장	성 명	
	주 소	(전 화)
	생년월일	
시 설 개 요	명 칭	
	소 재 지	(전 화)

청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또는인)

청 양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 구비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3.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4. 어린이집의 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 계약서

- 시설명 : ○○어린이집
- 소재지 :
- 위탁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공립보육시설 ○○어린이집 운영위탁 및 관리에 관하여 위탁자 청양군수를 “가”라 하고 수탁자를 “나”라 하며 아래와 같이 청양군 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관리) “가”는 “나”에게 ○○어린이집 관리운영권과 별지 제5호서식의 대지, 건물 및 부대시설과 비품집기, 소모품(이하 수탁물이라 한다.)의 사용권을 “나”에게 위탁하고 “나”는 영유아보육법과 보육사업 지침, 청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및 본 계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2조(지도감독) “가”는 “나”가 제1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 관리 운영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제3조(종사자 임면) “가”는 “나”에게 종사자의 임면권을 위임한다. 다만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채용하고 임면사항을 “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타목적 사용금지) “나”는 수탁물을 어린이집 운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담보권, 기타의 권리를 설정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매매, 교환,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5조(증·개축) “나”는 “가”의 사전 승인 없이 건축물의 증축이나 개축, 수탁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제6조(현상유지) “나”는 수탁물을 수탁당시 이상으로 항상 보존(다만 소모품은 제외)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배상책임) ① “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대지와 건물 및 비품을 관리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이라고 “가”가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대지와 건물의 소실이나 훼손은 “나”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게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 그에 상당한 대가를 “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나”가 배상하여야 한다.

② “나”는 시설운영에 따르는 본인 및 직원, 보육아동 또는 시설물에 이르기 까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 그 이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나’는 “가”의 구상에 응해야 한다.

③ “나”는 보육아동 및 차량 운행 시 반드시 아동상해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각종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법적책임을 수행하여야 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8월 1일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청양군 조례 제2237호

청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제목 “총 칙” 을 “총칙” 으로 한다.

제1조 중 “기여함” 을 “이바지함” 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기관·단체” 를 “기관·법인·단체” 로 한다.

제4조 중 “강구하여” 를 “마련하여” 로 한다.

제6조 중 “청양군자원봉사센터” 를 “청양군 자원봉사센터” 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감안하여” 를 “고려하여”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
과 같이 한다.

③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

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8조 제목 “(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자격)” 을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자격)”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센터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선임하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센터장 선임 시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군수가 선임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제8조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임기만료” 를 “임기 만료” 로 한다.

제9조제6호 중 “기여” 를 “이바지” 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회계연도 개시” 를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소지한” 을 “가진” 으로, “있다.” 를 “있다” 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8월 1일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청양군 조례 제2238호

청양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양군에

거주하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미리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단독세대 또는 상태에 있는 65세 이상 노인
7. 그 밖에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 대상은 재난취약계층으로 하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비슷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 하지

않을 수 있다.

1.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2. 가스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3.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및 교체
4.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의 자재 교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절차) ①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하게 지원을 신청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읍장·면장 또는 이장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읍장·면장은 자산 현황,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따라 지원순위를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에 대하여 보완 요구 및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 ①군수는 지원대상자의 희망 시기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점검기관 및 수리업체 등에 전기안전진단 수수료 및 수리·보수비용 등을 지급한다.

②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소방 등의 관계기관에 협조요청 및 전문 점검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예산 확보) 군수는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재난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8월 1일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청양군 조례 제2239호

청양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함에 있어 그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로서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분수대·야외무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동상·상징탑·기념비 등 상징조형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설치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된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설치 신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설치주체”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6.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

복 및 원형 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7.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미술 작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인 설치를 할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설치신청) ① 군에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설치(이전·교체·철거를 포함한다)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군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 설치 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설치비용은 설치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구현 및 도시경관과의 조화
2.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
3. 설치장소의 적합성·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4. 규격 및 설치 부지면적의 적정성
5. 작품성·독창성 및 조형성 구현
6.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7. 주변 환경과의 조화

제7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2. 제13조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이전·교체·해체에 관한 사항
4. 공공조형물 등의 보수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군수가 위촉 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을 해제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총괄부서의 장,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2. 위촉 위원

가.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공공조형물이 설치되는 지역 주민 대표

다. 공공조형물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2인 이상

④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조형물의 설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연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설치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4조에 따른 설치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설치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붙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공공조형물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열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알려야 한다.
3.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주체에게 설치 여·부를 알려야 한다.
4. 주관부서는 설치주체가 심의 결과대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설치결과를 총괄부서에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공공조형물 설치 타당성 조사의견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업의 필요성,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심의예외) 제4조에 따라 설치 신청을 접수한 주관부서는 해당 조형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비슷한 심의를 거친 경우 위원회의 심의 없이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총괄부서에 설치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등) ① 위원회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 주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4조(공공조형물의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작성·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주관부서의 장은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관리계획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및 관리계획은 다음년도 2월말까지 총괄부서에 알려야 한다.

④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는 해당 공공조형물의 설치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는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이전·교체 또는 해체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 이를 알리고,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공공조형물의 활용)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 또는 설치 결정된 공공조형물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지 제2호서식]

공공조형물 설치계획서

1. 사업명

2. 추진기간

3. 사업개요

가. 규모 :

나. 모형 또는 형태 :

다. 재질 :

4. 작품설명

5. 제작자

6. 사업비

7. 사업비 조달계획

8. 기타사항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8월 1일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청양군 조례 제2240호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자연발생 마을 중 20가구 이상”을 “자연발생 마을 중 5가구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현대화”란 기존의 낡은 축사를 신축 및 개축으로 축사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청양군수는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가축사육시설을 신축, 증·개축 및 재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를 허용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라 기 허가 . 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같은 부지 내에 같은 면적이하로 현대화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화재 등) 으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신축, 개축 및 재축할 수 있다.
2. 주거밀집지역내에 있는 축사를 인근지역 200m이상 거리(소의 경우 100m 이상)에 위치한 가축사육 제한지역내로 기존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면적이내에서 신축 이전하는 경우. 다만, 신축시설은 현대화시설로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여 하며, 이전지역 300m내 주민동의(70%이상)를 받아야 하고 기존 축사는 이전 축사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철거하거나 축사 이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 제4항 을 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가축사육제한지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형도면 변경고시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8월 1일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청양군 조례 제2241호

청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군의 조례**”를 “**조례**”로,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례가**”를 “**조례에서**”로, “**「관광진흥법」 제50조 제1항**”
을 “**「관광진흥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
조**”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
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를 “**의한 수탁자**”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영 제8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 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감안”을 “고려”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를 “영 제6조”로 한다.

제18조 중 “법 제19조”를 “법 제21조”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그중”을 “그 중”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제1호 중 “공중화장실등”을 “공중화장실 등”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청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을 “「청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그중”을 “그 중”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제1호 중 “공중화장실등”을 “공중화장실 등”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청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을 “「청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8월 1일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청양군 조례 제2242호

청양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양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청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음식물류폐기물”을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음식물류폐기물”을 “음식물류 폐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폐기물”을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음식물

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폐기물”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

제3조 중 “음식물류폐기물”을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

제4조 제목 “(음식물류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을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6조 중 “다량배출사업장”을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 “기본 원칙”을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6조”를 “식품접객”으로 한다.

제8조제4항 본문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를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서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변경신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대규모점포”를 “대규모 점포”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이하 종량제 시행)하여야 한다”를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제작계약”을 “제작 계약”으로, “민·형사상”을 “민사상·형사상”으로 한다.

제20조제1호 본문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별지4의10”을 “별지 제4호의10”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을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별지 제3

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서식4의9”를 “별지 제4호9”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지방세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작성요령>

- ⑦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이 1일 300kg이상인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⑧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집단급식소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잔반저울 설치, 메뉴선호도 조사, 식사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
음식점 호텔·콘도 등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대규모점포	소포장 농·수·축산물 판매 깔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
농수산물시장	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
공통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 ⑪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 항목에는 1) 가열 또는 건조 2)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등의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⑫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 항목에는 감량시설의 용량을 기재합니다.
- ⑭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 항목에는 실제 처리하는 양을 기재합니다.
- ⑮ 부산물이란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뜻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 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 ⑱ 자가재활용 계획 항목은 자체적으로 사료 또는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재합니다.
- ⑲ 위탁재활용계획 항목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위탁계약비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첨부제출 하여야 합니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8월 1일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청양군 조례 제2243호

청양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 및 제55조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 규정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법 제3조제14호 규정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

한다.

3.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을,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해당 지역의 사용자대표협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4. “사용자”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5. “사용자대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란 사용자들로 구성된 협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적절하고 합리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10년마다 정비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 계획과 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세워야 한다.

제2장 시설의 관리와 보수

제4조(시설의 관리) 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실시 등 급수시설의 운영일체를 관리한다.

② 관리자는 급수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 ① 관리자는 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정기점검대장에 기

록·보존하여야 하며, 수시점검을 실시 한 경우에도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 한 경우에는 점검 결과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 ① 군수는 법 제29조 및 제55조제1항과 환경부령(상수원 관리규칙 제2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규칙 제4조제1항2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 결과를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7조(개선조치) ① 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보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급수 시설에 대해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시설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 급수 중단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8조(유지보수) ① 관리자는 유지·보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의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군수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및 수량의 고갈, 누수 발생지역 등에 대한 개보수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2조에 따라 위탁된 급수시설의 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시설의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원수 확보를 위한 취수정 및 배수지 설치
2. 심정의 모터펌프설치 및 교체
3. 수도 본선의 관로교체
4. 부대사업(염소 투입기, 감시 카메라, 유지관리 시스템 등)
5. 그 밖에 상수원 보호 및 수질 관리를 위한 부대시설

제9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① 군수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급수시설의 피해가 발생 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세워 비상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의 폐지) ① 군수는 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또는 광역상수도 공급지역으로서 배수관로가 매설된 지역의 급수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급수시설을 폐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 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급수시설의 관리에 관한 권한 일부를 읍장·면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3장 요 금 징 수

제12조(요금징수) ① 관리자 및 협의회 에서는 급수시설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3조(관리비용) ① 군수가 제12조에 따른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지역은 급수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급수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기준, 사용자간의 비용 부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계량기) 관리자는 요금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변상) 급수시설을 파손한 사람은 그 손해에 충분한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4장 사용자대표협의회

제16조(설치) 관리자는 급수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① 협의회는 급수시설 사용자 중 3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대표자는 협의회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협의회의 대표자를 선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위시설이 속

한 마을 이장이 협의회 대표자가 된다. 협의회 개최 및 대표자의 임무는 규칙에서 정한다.

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급수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와 우물소독약 투입
2. 수도요금 징수
3. 관정·약품투입기·정화장치 등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의 납부
4.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이상 발견 시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5.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6. 급수시설의 고장, 누수 신고 등 기타 시설의 관리 운영

제19조(개최)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 개최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협의회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사용자의 3분의1 이상이 요구가 있을 경우
- 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0조(교육) 군수는 급수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

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5조에 따른 정기점검 시 같이 실시 할 수 있다.

제21조(관리의 위탁) 군수는 대표자에게 급수시설 유지관리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청양군 간이상수도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마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대장(제4조 관련)

관리번호		군 제 호							
구분	항 목	내역							
일반 현황	위 치	충남 청양군 읍(면) 로(길) 마을, 부락							
	관리위원장	성 명			전 화 번 호				
	준공연월일	년 월 일	최초사업자						
투자 현황	총 투자액 (만원)	구 분	내 역	일 자	국 고 보 조	지방비	주민 부담	기타	
					자재지원	현금지원	시도비·시군비		
		최초사업비							
		시설 개량	1차						
			2차						
			3차						
수원이전 계									
시설 현황	수원의종류	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							
	시설의유형	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							
	취수시설	보유시설	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						
		시설내역	구 분	재 원			시설상태		특기사항
						양 호	불 량		
			집수정1					심도 : m	
			집수정2					심도 : m	
	양수모터1					마력			
	양수모터2					마력			
	정수시설	보유시설	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						
시설내역		구 분	재 원			시설상태		특기사항	
					양 호	불 량			
		소독시설							
		침 전 지							
여 과 지									
배 수 지									
송배수관로	구 분	송 수 관 로			배 수 관 로			관종별 총연장m	
		관 종	직 경	연 장	관 종	직 경	연 장		
	시설내역		mm	M		mm	M		
			mm	M		mm	M		
			mm	M		mm	M		
	mm	M		mm	M	총계: M			
급수 현황	계 획	급수인구 : 명	급수인구 : 명	1명당 1일급수량 : 리터					
	현 재	급수인구 : 명	급수인구 : 명	1명당 1일급수량 : 리터					
	제한급수	1차 :	2차 :	3차 :	계 :	일간			
수질 검사	검사시설	취수원	배수지	수도전	검사기관	(개 항목)			
	합격여부								
개량 내역	개량일자	개량시설명	소요액(만원)	시 공 자	개 량 내 용				
수원 이전	이전사유				이전일자			소요비용	만원
	이전위치								

(별지 제2호서식)

마을급수시설 정기점검대장(제5조 관련)

관련번호	청양군 제 호	점검일자 : 20 . . . (요일)			
조사 및 확인항목	검 사 일		특 기 사 항	조 치 결 과	
	월	일			
시설의 장 소	소 독 기				
	취 수 원				
	배 수 지				
	침 전 지				
	여 과 지				
	관리파손				
오염원	취 수 원 부 근				
제 거	배 수 지 부 근				
주 1 : 수질검사결과 사본을 붙일 것 다만, 수질검사는 3개월마다 실시				청양군 담당자	

(별지 제3호서식)

마을급수시설 수시점검대장(제5조 관련)

관련번호	청양군 제 호		
점 검 항 목	점 검 내 용	점 검 자	확 인 자
1. 소독시설 유무			
2.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 이내에 세균성 오염원 (분뇨, 퇴비, 쓰레기장 등)의 유무			
3. 수원으로부터 100m이내 에 유독성물질(공장폐수 등)의 유무			
4. 저수탱크의 누수유무			
5. 외 관 (냄새, 색, 탁도)은 양호한가?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8월 1일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청양군 조례 제2244호

청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및 시행령”을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이내에”를 “이 내”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라 물의 재이용이”를 “영 제11조에 의한 규정에 따라 그 밖에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제6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제6조제3항 중 “경우 규칙”을 “경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이내에”를 “이 내”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충족하는”을 “갖춘”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징수한다”를 “징수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수할”을 “돌려받을”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빗물·중수·하·폐수”를 “빗물·중수·하수·폐수”로, “「청양군 수도급수 조례」”를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청양군 하수도 조례」”를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환수할”을 “돌려받을”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 중 “발굴하고”를 “찾아내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8월 1일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청양군 조례 제2245호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5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3조(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 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 행정 관리비 등 공사에 드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 무자는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 부분의 설치시공 전, 설치시공 과정, 설치시공 후의 사진을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

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

2. 법 제27조제7항,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7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8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라서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9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상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알려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③ 제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 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상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월 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0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부)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이하 “신용카드 등” 이

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청양군과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군수는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 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크게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

1 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2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한 경우에도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배출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사용자는 계측장치 설치장소에 계측기의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게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제14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m³/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증가할 경우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오수발생량. 다만, 1년 이내(준공일 기준)에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포함한다.

다. 건축주가 같은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등재인도 같은 사람으로

본다)같은 번지 또는 연접번지에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건축물별 오수량을 합산하여 산정한다.(단. 지면 분할이 된 연접 건축물을 구입후 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별도로 산정한다)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피할 수 없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m³/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청양군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발생량(m³/일)에 단위단가(원/m³/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 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전 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 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가·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18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가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m³/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하수도정비기본

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 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드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하도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분뇨 수집·운반 등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8조(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로부터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7.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1~3등급 장애인이 있는 세대
8.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제3호, 제4호 및 5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게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19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군수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
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연체금 및 독촉)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
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응하는 연체금을 징수하며 다음번 납기요금에 추가
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액은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
위에서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방식으로 산정한다.

1. 연체금=미납요금×2/100×(연체일수/월력일수)

② 제①항의 경우에 군수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
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
을 발부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8조제2항 관련)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가. 하수도 사용업종은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별표 제3회] 업종별 구분표에 의한다.
- 나. 상기 업종에서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다.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하는 업종에 대하여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한다.

구분 업종	사용구분 (m ³ /월)	m ³ 당 요금(원)				
		1차	2차	3차	4차	5차
가정용	1~20	236	250	263	277	290
	21~40	308	326	343	361	378
	41이상	425	449	473	497	521
일반용	1~50	382	403	425	446	468
	51~100	458	484	510	536	562
	101이상	535	566	596	626	657
대중탕용	1~300	411	435	458	481	504
	301~500	494	522	550	578	606
	501이상	576	608	641	673	706
전용공업용	1~200	257	271	286	300	315
	201이상	345	364	384	403	423

2. 하수도 사용 요금표

- 주1) 단일 시설내에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
- 주2) 요금(단가) 중 1차는 2016년 1월 검침분부터 12월 검침분까지, 2차는 2017년 1월 검침분 부터 12월 검침분까지, 3차는 2018년 1월 검침분부터 12월 검침분까지, 4차는 2019년 1월 검침분부터 12월 검침분까지, 5차는 2020년 1월 검침분부터 다음회 요금인상시까지 적용함.

[별표 2]

수질하수도사용료(제8조제3항)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물환경보존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배출량(m³/시간)] × $\frac{1}{1000}$ (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별표 3]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제13조제1항)

(365일 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주 1. 구분 및 산정기준은 시 또는 군별로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등을 고려하여 특성에 맞게 조정할 것.

< 계산 예 >

1.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이 100만원이고, 점용기간이 183일인 경우의 점용면적당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

$$= 100(\text{만원}) \times (6/100) \times (183/365) = 3(\text{만원})$$

[별표 4]

건축물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

(오수량 : m³/월)

구 분	최초 행정행 위시 오수발 생량(A)	1차 증축. 용도변경				2차 증축. 용도변경			
		증가량 (B)	총오수량 (C) (A+B)	부과량 (D)	적용방법	증가량 (E)	총오수량 (F) (C+E)	부과량 (G)	적용방법
기존 건축물 의 증축 및 용도 변경	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3	-	(B)<10 미부과	1	4	-	(B)+(E)<10 미부과
						6	9	-	
						12	15	12	(E)>10 전체부과
		7	7	-	(B)<10 미부과	2	9	-	(B)+(E)<10 미부과
						7	14	4	(B)+(E)>10 초과량부과
						11	18	11	(E)>10 전체부과
		11	11	11	(B)>10 전체부과	4	15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7	18	-	
						11	22	11	
		법시행 일 이후 신축 건축물	5 (미부과)	3	8	-	(A)+(B)<10 미부과	1	9
7	15							5	(A)+(B)+(E)>10 초과량부과
12	20							12	(E)>10 전체부과
7	12			2	(A)+(B)>10 초과량부과	1	13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6	18	-	
						12	24	12	
11	16		11	(B)>10 전체부과	1	17	-		
					6	22	-		
					12	28	12		
10 (부과)	3		13	-	(B)<10 미부과	3	16	-	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 부담금 부과량 산정
						6	19	-	
						12	25	12	
	7		17	-	(B)<10 미부과	2	19	-	
						6	23	3	
						12	29	12	
11	21	11	(B)>10 전체부과	2	23	-			
				6	27	-			
				12	33	12			

- 주) 1.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미부과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초과량부과
 3. 각각의 신축.증축.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방식(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

○ m^3 당 원인자부담금

$$= \frac{\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원)}}{\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m^3/\text{일})} \times \alpha$$

▷ $\alpha =$

$$\left(1 + \frac{\text{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연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100} \right)^n$$

▷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거(간선관거)를 포함한다.)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시·군 내 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시·군 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6]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제17조 제1항)

1. 수거식화장실

부과기준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계
18리터	133원	18원	151원

2.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구 분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계
기본요금 (750리터까지)	8,120원	750원	8,870원
초과요금 (100리터마다)	915원	100원	1,015원

- ※ “수집·운반”은 분뇨의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 포함)를 말함
- ※ “처리”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처리 수수료를 말함

[별표 7]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제18조제2항)

업종	구분	감면비율	
		중수도	재이용수
	일 반 용	20%	20%
	영 업 용	"	"
	욕 탕 용	"	"
	산 업 용	"	"

주) 감면비율은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계산 예>

1. 공공하수도사용료가 100원이고 감면비율이 20%인 경우 최종 공공하수도사용료는 ?
 - = 공공하수도 사용료(100원)
 - 감면액(100원×20%=20원)
 - = 80원 (최종 공공하수도사용료)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석탄회지역발전기금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8월 1일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청양군 조례 제2246 호

청양군석탄회지역발전기금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석탄회지역발전기금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양군석탄회지역발전기금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청양군 석탄회 지역발전기금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보령화력 7,8호기”를 “한국중부발전(주) 보령화력 7호기·8호기”로, “지역발전기금사업의”를 “지역발전기금 사업의”로, “청양군석탄회지역발전기금사업특별회계”를 “청양군 석탄회 지역발전기금 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 중 “청양군석탄회지역발전기금사업특별회계”를 “청양군 석탄회 지역

발전기금 사업 특별회계”로, “석탄회지역발전기금,”을 “석탄회 지역발전기금,”으로 한다.

제3조 중 “주민복지지원사업”을 “주민복지 지원사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8월 1일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청양군 조례 제2247호

청양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 및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을 말한다.

제3조(허가의 기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이전에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설을 변경(저장시설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하거나 장소를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액화석유가스허가사업의 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청양군 고시 제2000-41호」의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고시에 따른다.

【별 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 허가 기준

구 분		세 부 허 가 기 준
액 화 석 유 가 스 충 전 사 업	허가지역	<p>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p> <p>2.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p>
	시설기준	<p>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 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의 거리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 1)(가)에서 정한 기준의 2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p> <p>2. 사업장 부지는 사업장의 진·출입로와 직접 연결된 한 면의 폭이 8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며, 당해 도로는 공부상 도로이면서 현재 이용되어야 한다.</p>
	재원능력	<p>1. 개 인 - 재산세 30만원 이상 납부한 자 또는 10억원 이상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 (기간만료 시 연장 가입)</p> <p>2. 법 인 - 자본금 5억원 이상</p>

구 분		세 부 허 가 기 준
액 화 석 유 가 스 의 판 매 사 업 및 충 전 사 업 자 영 업 소	허가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2.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
	시설기준	1. 용기보관실, 사무실, 주차장 면적은 각각 다음과 같이 확보하여야 한다. 가. 용기보관실 : 38㎡이상 나. 사 무 실 : 18㎡이상 다. 주 차 장 : 23㎡이상 2. 사업장 부지는 사업장의 진·출입로와 직접 연결된 한 면의 폭이 8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며, 당해 도로는 공부상 도로이면서 현재 이용되어야 한다.
	재원능력	1. 개 인 - 재산세 20만원 이상 납부한 자 또는 5억원 이상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 (기간 만료 시 연장 가입) 2. 법 인 - 자본금 3억원 이상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8월 1일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청양군 조례 제2248호

청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청양군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청양군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지역경제과장, 주민복지실장

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가목의 경우에는 장애인·여성을 각 1명 이상으로 한다.

가. 장애인·노인·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도로·교통·복지 등 관련 분야의 교수 및 이에 준하는 전문가
제5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6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사전에”를 “미리”로, “통지하여야”를 “알려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관계기관·단체”를 “관계 기관·단체”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청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센터의 장”을 “센터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인, 민간단체, 운수업체, 콜센터”를 “법인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 센터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전단 중 “3년을”을 “5년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3년의”를 “5년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2항 중 “2월내에”를 “2월 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전에”를 “미리”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달성할”을 “이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지하고 사전에”를 “알리고 미리”로 한다.

제17조 중 “얻어”를 “받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탁계약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8월 1일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청양군 조례 제2249호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도지사**”를 “**충청남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이후**”를 “**이 후**”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읍·면사무소**”를 “**읍사무소,면사무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내에**”를 “**이 내**”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청양군 건

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 중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6조의2제3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17조의3을 제17조의6으로 하고, 제17조의3부터 제1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발전시설 허가 기준) ①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에 따라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로서 전기를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거 및 도로 이격거리 기준

가. 5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실제 거주 주택부지 간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한 것)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산등선으로 사업지구의 시설물이 가려지는 경우 250m 이내에 주택이 없을 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나. 5호 미만 거주할 경우 직선거리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 주요도로(「도로법」 제10조의 도로와 「농어촌 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면도 이상의 도로)에서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라. 신청 부지면적이 2,000㎡이내인 경우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100m 이상 이격하고, 발전사업 간의 제한거리를 경계로부터 50m 이상으로 이격할 것. 단, 가목의 5호이상 직선거리 500m와 나목의 5호미만의 직선거리 200m이상일 경우 50m 이격거리 규정을 제외한다.

2. 「농지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산지전용 허가 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산지 ha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 통계상 청양군 ha당 입목축적 100%이상인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자연의 보전, 문화재와 국가중요 시설의 보호, 지역의 역사성, 그 밖의 공익 차원의 자연경관 보전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걸쳐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③설치하는 공작물은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3m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시설 상호 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에 높이 1m 이상 울타리(웬스 또는 수목 등)설치할 시 완충공간을 확보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2m 이상의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높이 2m 이상의 차폐수 또는 차폐막을 권고 할 수 있다.

제17조의4(비도시지역의 숙박시설허가의 기준) ①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에 따라 비도시지역의 숙박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5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실제 거주 주택부지 간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한 것)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문화재, 유적지, 사찰, 서원 등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1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제17조의5(폐차장,도축장,고물상 허가의 기준) ①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에 따라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

야 한다.

1. 5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실제 거주 주택부지 간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한 것), 주요 도로(「도로법」 제10조의 도로와 「농어촌 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면도 이상의 도로), 하천, 저수지로부터 직선거리 1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공공시설(학교, 병원등) 부지 경계로부터 1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관광지, 문화재, 유적지, 사찰, 서원 등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1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종 자연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로 한다.

제37조 본문 중 “수변경관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한다.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4조 제목 “(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존지구”를 “보호지구”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건축물

제45조 제목 “(학교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을 “(특정용도제한지구안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7조제1항”을 “영 제80조”로, “학교시설보호지구”를 “특정용도제한지구”로 한다.

제46조 제목 “(공용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을 “(공용시설물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7조제1항”을 “영

제76조”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8조를 삭제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1조제2항 중 “**이하로 한다.**”를 “**이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은 90퍼센트 이하

제53조의2 중 “**영 제84조제5항제4호**”를 “**영 제84조제6항제4호**”로 한다.

제5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녹 지지역 · 보전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 농림지역**”을 “**녹지지역 · 보전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 농림지역**”으로 한다.

제53조의4 중 “**영 제84조제5항2호**”를 “**영 제84조제6항2호**”로 한다.

제5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을 500퍼센트 이하로,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 의 용적률을 40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역안**”을 “**구역 안**”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

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제60조제2항 중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을 “어느 하나”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9인”을 “15명”으로 한다.

제75조 전단 중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를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별표 15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정공장·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식품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및 제1차산업 생산품”을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생산품”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별표 15 제12호다목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별표 15 제12호라목 중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동법”을 “같은 법”으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를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로 한다.

별표 16 제15호가목 중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식품공장”으로 한다.

별표 17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제12호를 제13호로 하며, 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제14호를 제15호로 하며, 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제16호를 제17호로 하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별표 18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별표 18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식품공장”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

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별표 18 제11호다목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별표 18 제1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별표 1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1 제2호 중 “가목·바목·사목·아목 및 차목”을 “가목·바목·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아목”으로 하고, 제7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제7호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군사시설 중 관할 군수가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별표 22 제17호를 제18호로 하고, 제18호를 제19호로 하며, 제19호를 제20호

로 하고, 제20호를 제21호로 하며, 제21호를 제22호로 하고,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7조제19호 관련)

1. 영 별표 20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2. 영 별표 20 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조례 별표 24에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조례 별표 24에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8월 1일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청양군 조례 제2250호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법 시행령 제8조**”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2월 31**”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를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단

서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9조 제목 “(자동계좌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 중 “자동계좌이체”를 “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를 “자동이체와 전자송달”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동일한”을 “같은”으로 한다.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을 “영 제126조제1항”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아니하는”을 각각 “않는”으로 한다.

제15조 후단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7조”를 “영 제127조”로 한다.

제15조의2 중 “아니한”을 “않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균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8월 1일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청양군 조례 제2251호

청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서 위임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세무부서장"이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4.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크게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법·영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납세자보호관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납세자 보호관을 세무부서 외 군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둔다.

②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군수는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6급

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인 자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

는 자는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법 제77조제2항 및 영 제51조의2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2.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현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6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요구
3.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5.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세무부서장에게 행사한다.

제3장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

제8조(안건 심의 등) ① 고충민원 등 심의는 「청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납세자보호관과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5백만 원 이상인 안건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제2항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은 법·영·「청양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4장 고충민원

제10조(고충민원 처리준칙)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은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이 그 대상이다.

제12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않은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6. 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항

7.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고충민원의 분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처리한다.

1. 군수가 결정·처분한 사안인 경우
2. 군수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인 것인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 ①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방세 부과에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내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위원회 심의·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조화·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까지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끝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두 번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증명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7조(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에 대한 세무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8조(불이익변경금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에게 고충민원 신청 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불복 제외대상)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5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제20조(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장이 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1조(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제20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1.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22조(세무조사 연기신청)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23조(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21조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요구한 기간을 줄여 승인할 수 있다.

제6장 권리보호 요청

제24조(권리보호요청 처리 기본원칙) 권리보호요청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납세자보호관은 법·영 또는 이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세무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5조(고충민원과 구분) ① 권리보호요청은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고충민원과 구분된다. 다만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2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② 권리보호요청은 주로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 또는 집행이 예정된 경우에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크게 예상되는 경우에 제출되는 민원으로 한다.

제26조(요청 대상) ①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법·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크게 되는 경우

② 일반 지방세 행정 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영 및 지방세 관계 법령에 의한 경우 제외한다.)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크게 예상되는 경우

제27조(권리보호요청 기한)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할 수 있다.

제28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권리보호요청은 7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까지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로 한다.

제7장 납세자권리헌장

제29조(납세자권리헌장 제정) ① 군수는 법 제76조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 등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30조(납세자권리헌장 준수)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납세자권리헌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제31조(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민원 발생원인 분석 이외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제도개선 과제 관리) 납세자보호관은 제도개선 과제를 분석하여 세무부서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관리한다.

제9장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제33조(업무의 범위) 군수는 영 제51조의2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업무 이외에도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에 따른 납세자의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2. 법 제57조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3.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납세자의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제34조(기한의 연장신청)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5조(기한의 연장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기한의 연장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기한의 연장 신청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36조(가산세의 감면신청)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7조(가산세의 감면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제3항에 따른 세무부서 의견 및 제5항에 따른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가산세 감면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가산세 감면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38조(징수유예 등 신청) ①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9조(징수유예 등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사실 확인 결과 및 납세담보의 제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8월 1일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청양군 조례 제2252호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별표**”를 “**별표 1, 별표 2**”로 하고, 같은 항 본문 및 제2항 중 “**동일한**”을 각각 “**같은**”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귀책사유**”를 “**책임질 사유**”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결정
· 등록된 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

마.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

제7조제1항제6호 중 “소지한”을 “가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

제7조제2항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별표 1 [증명]의 제4호(1) 중 “과세(납세)증명서”를 “과세증명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8월 1일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청양군 조례 제2253호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양군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청양군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공무원은”을 “청양군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으로,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7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1의2”를 “별표 1의2”로 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된다”를 “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사항으로서”를 각각 “사항으로써”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준수하여”를 “지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준수하여야”를 “지켜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영위하여”를 “하고”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 외의 당직근무자”를 “당직 및 비상근무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를 “사전 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아니된다”를 “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화·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을 “전화·팩스 등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체없”을 “지체 없”으로,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 하여야”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결과를 보고하여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9조제2항 중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 업무”를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근무”로, “해당하게 된”을 “해당하는 행위를 한”으로, “본직 기관”을 “원 소속기관”으로, “통보하여야”를 “알려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0조의4에 따라”로, “파견받은 기관”을 “그 근무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 근무자의”를 “파견근무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근무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원”으로, “통보하여야”를 “알려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으로 한다.

제11조 제목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를 “(파면·해임된 공무원의 근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해직된”을 “파면·해임된”으로,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를 “직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근무중”을 “근무 중”으로, “착용하여야”를 “입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증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따른다”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포함하지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입한다”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해”를 “다음 해”로, “가산한다”를 “더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잔여연가일수”를 “잔여 연가일수”로 한다. 제18조의2 중 “별표4”를 “별표 4”로 한다.

제19조제2항 본문 중 “초과하는”을 “넘는”으로,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를 “두 번 이상으로 나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6조의2”를 “제25조의2”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반일단위”를 “반일단 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당해공무원”을 “해당 공무원”으로, “범위안”을 “범위 안”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초과할”을 “넘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초과하는”을 “넘는”으로, “범위안”을 “범위 안”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차년도”를 “다음 연도”로 한다.

제20조 제목 “(연가일수에서의 공제)”를 “(연가일수의 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제한다”를 “뺀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 휴직자의 연가일수 = [(12월-해당연도 휴직기간)/12월] * 해당년도 연가일수

제20조제5항 본문 중 “**초과하는**”을 “**넘는**”으로, “**공제한다**”를 “**뺀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범위안**”을 “**범위 안**”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제하는**”을 “**빼는**”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포함하지 않는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첨부하여야**”를 “**붙여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 소속공무원**”을 “**소속공무원**”으로, “**기간**”을 “**기간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제22조제6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제2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군수는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하여 총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 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 우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제23조제5항 중 “「한국방송대학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으로, “초과하는”을 “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유산”으로,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를 “유산휴가·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분할하여”를 “나뉘”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을 제1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군수는 공무원이 본인의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가 출산할 때 1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23조제16항(중전의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⑯ 군수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25조 중 “초과한”을 “넘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8월 1일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청양군 조례 제2254호

청양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업소, 읍·면사무소”를 “직속기관, 사업소, 읍사무소·면사무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군수(출장소포함), 사업소장, 읍·면장, 읍·면출장소장, 부속기관의 장”을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장·면장”으로, “조례가”를 “조례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소장, 읍·면장에게”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장·면장에게”로, “별표2”를 “별표 2”로, “사업소장, 읍·면장의”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장·면장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무중”을 “사무 중”으로, “읍·면장”을 “읍장·면장”으로, “별표3”을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사업소장, 읍·면장, 출장소장”을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장·면장”으로, “비치할”을 “갖춰 둘”로 하며, 같은 항 후

단 중 “사전에”를 “미리”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삭제)

제2조제7항 본문 중 “내지”를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읍·면장”을 “읍장·면장”으로, “이미 지화하여”를 “이미지화하여”로 한다.

제2조의2 중 “교부하는”을 각각 “발급하는”으로 한다.

제3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제2항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각인할”을 “도장을 새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인하여야”를 “도장을 새겨야”로 한다.

제6조 제목 “(공인의 교부·재교부)”를 “(공인의 등록·재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인의 등록·재등록은 행정지원과장이 이를 행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읍 면장, 부속기관의 장”을 “직속기관의장 및 사업소장, 읍장·면장”으로, “교부 또는 재교부코자”를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로, “도 및 군(출장소 포함) 행정지원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소장”을 “직속기관장”으로, “얻어야 한다”를 “받아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않으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행정지원과장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고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붙여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행정지원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에서 공인을 재등록 할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바꿔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과 별제 제6호서식의 전자이미지**”로, “**공인의 교부·재교부**”를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재등록**”으로 한다.

제8조 중 “**군 행정지원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9조 중 “**공인**”을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으로, “**교부·재교부 하거**”를 “**등록·재등록하거**”로 한다.

제10조 제목 “**(교부 및 재교부)**”를 “**(교부 및 재교부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재교부된, 군(출장소 포함) 읍·면장**”을 “**재교부된 군수 및 읍장·면장**”으로, “**10월까지 도지사에게 제출**”을 “**10일까지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재교부**”를 “**재등록**”으로, “**군(출장소 포함) 행정지원과장에게 지체없**”을 “**행정지원과장에게 지체 없**”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군 행정지원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12조 중 “공인관수자”를 “공인 관수자”로, “지체없”을 “지체 없”으로, “동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군(출장소 포함)”을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공인의 관수자) 공인의 관수자는 청양군은 행정지원과장이 직속기관·사업소는 직제상 순 위에 의한 과장 또는 팀장이 읍·면은 부읍장·부면장이 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 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제14조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날인하여야”를 “도장 찍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등·초본”을 “등본·초본”으로 한다.

별표 1 중 “출장소장 및 지소장, 사업소장, 읍면장”을 “군수, 직속기관·사업소장, 읍·면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2호 중 “출장소장”을 “직속기관장”으로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목 “공인의 교부(재교부) 신청”을 “공인의 등록(재등록) 신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기호(□) 중 “공인교부(재교부)신청”을 “공인등록(재등록)신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에 기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전자이미지공인(재등록)신청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목 “공인교부(재교부)보고서”를 “공인등록(재등록)보고서”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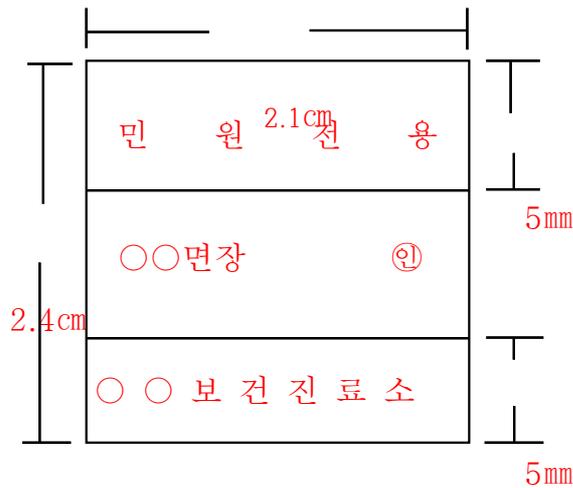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 인 의 구 분		규 격
청 인	합 의 제 기 관	3.6센티미터 정방향
직 인	1. 군수, 직속기관·사업소장, 읍·면장 의 공인 가. 2급 또는 3급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나.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다.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2.4센티미터 정방향 2.1센티미터 정방향 1.8센티미터 정방향
	2.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의 보조기관 공인	1.6센티미터 정방향
특 수 공 인	3.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 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및 분임자 나. 채납원 및 분임자	2.0센티미터 정방향 1.8센티미터 정방향

[별표 4]



[별지 제1호서식]

공 인 대 장

공인명					
종 류	<input type="checkbox"/> 청인 <input type="checkbox"/> 직인 <input type="checkbox"/> 특수공인	관리부서			
<input type="checkbox"/> 등록 · <input type="checkbox"/> 재등록 공인	(인 영)	등 록 일	년	월 일	
		새 긴 날	년	월 일	
		새 긴 사 람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최초 사용일	년	월 일	
		재 료			
		교 부 사 유			
		도 보 공 고	년	월 일	
			(제 호)		
폐 기 공 인	(인 영)	등 록 일	년	월 일	
		폐 기 일 (분 실 일)	년	월 일	
		폐 기 사 유			
		폐 기 방 법			
		폐 기 자			
		도 보 공 고	년	월 일	
			(제 호)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input type="checkbox"/>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할 때에는 <input type="checkbox"/>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번호 및 시행일자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별지 제2호서식]

공인의 등록(재등록) 신청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참 조

- 제 목
- 공인등록(재등록)신청
 - 공인폐기신고
 - 전자이미지공인(재등록)신청

공 인 명		
종 류		<input type="checkbox"/> 청인 <input type="checkbox"/> 직인 <input type="checkbox"/> 특수공인
등록(재등록, 폐기) 사유		
폐기 대상 공인 처리	폐기 예정 일 (분 실 일)	년 월 일
	폐기 방법	<input type="checkbox"/> 소각 <input type="checkbox"/> 이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폐기 자	소속 : 직급 : 성명 :
비 고		

[별지 제4호서식]

공인등록(재등록)보고서

청양군수

①인

년

월

일

신

규

변

경

공 인 명

인 명

공 인 명

인 명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8월 1일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청양군 조례 제2255호

청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청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 한법률」”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제2항에 따라”로, “상당하는”을 “상응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를 “상응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

이상의 기관단위”를 “2개 이상의 기관 단위”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정대리자”를 “법정 대리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1호와 관련된 인사관련업무”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규정된 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료정리·타자 등 단순업무”를 “자료정리 등 단순 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제3조제1항제9호(중전의 제8호) 중 “유사”를 “비슷”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업무중”을 “업무 중”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2이상”을 “2개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되”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로, “첨부하여야”를 “붙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교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첨부서류”를 “붙임서류”로,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교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통보하여야”를 “알려야”로 한다.

제7조 중 “통지하여 의결전”을 “알려 의결 전”으로, “소명할”을 “밝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10인”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가급적”을 “되도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명 이상인”을 “1할 이상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초과

할”을 “넘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소속공무원중”을 “소속공무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지하여야”를 “알려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임하여야”를 “따라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소속공무원 중”을 “소속공무원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이”를 “규칙에서”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이내에”를 “이 내”로, “통보하여야”를 “알려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적격자가”를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로, “응하여야”를 “따라야”로 한다.

제13조 단서 중 “근무시간중에”를 “근무시간 중”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8월 1일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청양군 조례 제2256호

청양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특정**”을 “**특별히 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청양군보건의료원**”을 “**청양군 보건의료원(이하 “보건의료원”이라 한다)**”으로, “**읍·면사무소**”를 “**읍사무소·면사무소**”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보건의료원장
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 가.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 나. 장기기증 단체 임원 및 종교단체 지도자
 - 다.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병원장 또는 의사회 회장

- 라. 군 직능 단체장
- 마. 군내 기업체 대표
- 바. 군내 언론인, 체육인이나 예술인
- 사. 장기기증자이거나 장기기증 등록자

제4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 단서 중 “보궐위원”을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으로, “임기로”를 “기간으로”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과반수로”를 “과반수의 찬성으로”로 한다.

제8조 중 “청양군보건의료원”을 “보건의료원”으로, “읍·면사무소”를 “읍사무소·면사무소”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할”을 “지원을 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8월 1일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청양군 조례 제2257호

청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청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및 협의·조정한다.

1. 군민 건강증진 시책의 계획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군민 건강 생활의 실천 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문이 요구되는 군민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군민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 가. 학계, 언론계 또는 관련 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나. 보건의료 및 지역사회 기관·단체의 임직원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8월 1일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청양군 조례 제2258호

청양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2”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로, “세부사항”을 “사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첨부하여 이를”을 “붙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이내에”를 “이 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후 그 위촉여부”를 “후 위촉여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에 따라 금

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금연지도원증”으로,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을 “기재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금연지도원증”으로,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첨부하여”를 “붙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이내에”를 “이내”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4조, 제5조 및 제7조를 각각 제5조, 제6조 및 제8조로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중전의 제4조) 제목 “(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를 “(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지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하였을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 하여야 한다.

제5조(중전의 제4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시장은”을 “군수는”으로 한다.

제6조(중전의 제5조)제1항 본문 중 “관할”을 “청양군 관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을 “합동단속의 지원을 요청 받은”으로,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을 “지역에서 활동

하게 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금연지도원이 제2항”으로, “금연지도원이 단독”을 “단독”으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군수는 금연지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 중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를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중 “041-940-4534”를 “041-940-4532”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를 “동법 시행령 제16조의5”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3조제4항”을 “「청양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6조”를 “「청양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8월 1일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청양군 조례 제2259호

청양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양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를 “청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기여하는”을 “이바지하는”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하여”를 “세워”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제 6호에 해당되는 사항

제6조 제목 “(생명존중위원회 설치)”를 “(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관한 다음”으로,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되는

청양군생명존중및자살예방위원회”를 “청양군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자살예방추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를 “인정하”로 한다.

제7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직 위원”을 “위원”으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를 “사람이 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 보건의료원장, 주민복지실장

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나. 군 자원봉사단체 회장

다. 사회복지, 심리학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상담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라. 의사, 약사, 종교지도자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제2항(중전의 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중전의 제8조) 제목 “(위원회 회의 등)”을 “(위원회 운영 등)”으로 한다.

제10조(중전의 제9조)제1항 중 “구축”을 “마련”으로 한다.

제11조(중전의 제10조)제2항 중 “조사·연구기관에”를 “조사·연구기관에게”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양군자살예방센터”를 “청양군 자살예방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제14조(중전의 제13조)제1항 중 “미치”를 “주”로 한다.

제16조(중전의 제15조) 중 “아니”를 “안”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8월 1일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청양군 조례 제2260호

청양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양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를 “청양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청양군 보건의료원의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군수는”을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양군”으로, “법 제9조제2호, 제3호, 제4호, 제8호, 제11호, 제13호, 제15호, 제16호 및 영 제22조제2항제1호, 제2호 규정”을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로, “의료법 제2조”를 “「의료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소요되는 실비”를 “필요한 실제비용”으로 한

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22조제2항”을 “법 제30조제2항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으로, “지도감독”을 “지도·감독”으로 한다.

제4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8월 1일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청양군 조례 제2261호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양군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를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14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25조에 따라 청양군의”로, “진료비를 징수함”을 “진료비 징수”로 한다.

제4조 단서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초과할”을 “넘을”로 한다.

제5조 단서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별도”를 “따”로 한다.

제8조 제목 “(증명발급 수수료)”를 “(제증명발급 수수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1””을 “제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진료비 수수료”를 “진료비 및 수수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입원중에”를 “입원 중”으로 한다.

제10조 제목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등)”을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제10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진료비중”을 “진료비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진료행위시”를 “진료 행위 시”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4조”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8월 1일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청양군 조례 제2262호

청양군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양군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청양군 귀농인·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양군 귀농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귀농인”이란 타 지역에서 1년이상 농업 이외의 산업에서 종사하다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의 전입신고일자를 기준으로 만5년의 범위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귀촌인”이란 타 지역에서 1년이상 농업 이외의 산업에서 종사하다가 군

으로의 전입신고일자를 기준으로 만5년의 범위에서 전원생활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타 지역은 농촌 외의 도시지역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업 관련 용어의 정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앞에 “제2장 귀농인 지원 체계”를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귀농·귀촌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양군 귀농·귀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양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청양군 농업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위원회를 대행한다.

제4조제1호 중 “귀농인”을 “귀농인·귀촌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귀농인”을 각각 “귀농인·귀촌인”으로, 같은 호 중 “귀농홍보”를 “귀농·귀촌 홍보”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귀농인”을 “귀농인·귀촌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군수”를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사항 협의”를 “사항”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귀농인”을 각각 “귀농인·귀촌인”으로, 같은 항 중 “규칙이”를 “규칙에서”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귀농인”을 “귀농인·귀촌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귀농”을 “귀농·귀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귀농인의 영농”을 “귀농인·귀촌인의 정착”으로 한다.

제11조 중 “규칙이”를 “규칙에서”로 한다.

제12조 제목 “(귀농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을 “(귀농인·귀촌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귀농자”를 “귀농인·귀촌인”으로 한다.

제13조 앞에 “제3장 보 칙”을 삭제한다.

제13조 제목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귀농인·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귀농인”을 “귀농인·귀촌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조 및 용자금”을 “보조금 및 용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으로, “지원받은 금액의”를 “지원금”으로, “회수하여야”를 “돌려받아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불가피한”을 “피할 수 없는”으로, “경우에는”을 “경우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귀농인”을 “귀농인·귀촌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이내에 청양군”을 “이내 군”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무관한”을 “관계없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귀농인”을 “귀농인·귀촌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8월 1일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청양군 조례 제2263호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운영위원회 설치) ① 청양군의회에는 상임위원회로 의회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의회운영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① 의회운영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의회운영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2.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
3.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제4조(의회운영위원) 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의회운영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운영위원의 임기

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운영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운영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③ 보임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 ① 의회운영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위원장의 임기는 운영위원 임기와 같다.

⑤ 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의회는 행정사무감사(조사)·청원심사 및 중요 조례안 심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청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③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7조(특별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선임)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

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10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1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8월 1일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청양군 조례 제2264호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의회는 군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제3조제3항 중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를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과태료 부과·징수의 절차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신용정보 제
공 등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8월 1일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청양군 규칙 제1206호

청양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청양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양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을 “청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규칙은 청양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규칙은 「청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는 조례”를 “는 「청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군내”를 “청양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휴업중인업소 또는 법”을 “휴업중인 업소 또는 「식품위생법」”으로 한다.

제4조 중 “좋은식단실천”을 “좋은식단 실천”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본·지점”을 “본점·지점”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2이상”을 “2회 이상”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식품위생법 제82조”를 “법 제82조”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지”를 “또는”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금액을 청양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이용조례 및 동조례시행
규칙에 의하여 청양군식품진흥기금”을 “금액을 「청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이용 조례」와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청양군 식품진흥기금”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청양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이용조례 제13조 및 동조례시행
규칙”을 “「청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이용 조례」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
칙”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청양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이용조례 제13조 및 동조례시행
규칙”을 “「청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이용 조례」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
칙”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청양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이용조례 제13조 및 동조례시행
규칙”을 “「청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이용 조례」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
칙”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8월 1일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청양군 규칙 제1207호

청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청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청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청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청양군 자원봉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중 “위원장”을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총괄한다.”를 “총괄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자원봉사업무 부서장, 자원봉사센터장

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관련학과 교수 등 자원봉사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제2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조제5항(중전의 제4항)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9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센터직원”을 “센터 직원”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법인에”를 “법인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10조 중 “소요비용”을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비치하고”를 “갖춰 두고”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서”를 “신청 시”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초·중·고등학교”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읍·면사무소”를 “읍사무소·면사무소”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사전에”를 “미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입증”을 “증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및 제2호 중 “가산한다”를 각각 “계산한다”로 한다.

제16조제2호 중 “타인”을 “다른 인”으로 한다.

제17조제3항제4호 중 “지역내”를 “지역 내”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로, “단체소속”을 “단체 소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행정안전부 자원봉사보험료 지원사업 시행지침」”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치하여야”를 “갖춰 두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원봉사자활동 참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제20조제2호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

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원봉사자 개인 등록카드 (별지 제3호서식)
4. 자원봉사단체 등록카드 (별지 제4호서식)
5.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 6.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별지 제6호서식)
7. 자원봉사자증 (별지 제7호서식)
8.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 (별지 제8호서식)

제20조제9호 중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8월 1일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청양군 규칙 제1208호

청양군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급수 시설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호시설의 설치) ① 청양군수 (이하 “군수” 라 한다)는 급수시설의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상시 감시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보안장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변여건상 보호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

② 마을급수시설의 개량 및 신설 시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 설치계획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안내판의 도안과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협의회 설치 또는 변경 보고) 협의회를 설치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

내 별지 제1호서식의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대표자 임무) 대표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 운영의 총괄 및 기록관리
2. 유해시설 제거 및 시설보호
3. 시설의 일상적 관리 및 응급조치
4. 시설관리에 따른 조치사항 보고 및 전달
5. 그 밖에 조례·규칙 및 협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제5조(협회의 개최)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또는 사용자 세대주 15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협의회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등 징수) ① 상수도사용료 및 변상금(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마을급수 시설 사용가구별로 알려야 한다. 다만, 월정액으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7조(사용료 등의 사용) 사용료 등은 협의회 의결을 받아 해당 마을급수시

설의 개선 및 유지관리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등의 결산) 대표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료 징수·사용내역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협의회 의결을 거친 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마을급수시설 사용가구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 징수·사용내역을 총회 시 보고하는 걸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시설변경·폐지) ① 대표자는 마을급수시설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변경 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원 및 취수시설 변경사항
2. 정수시설 및 배수관로 변경·연장사항(가정급수관로 연장 제외)

제10조(협의회 규약) ① 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 규약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규약내용은 협의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관리의 위탁) 대표자에게 위탁하는 마을급수시설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급수시설의 운영
2. 시설의 유지관리
3. 상수원 보호 및 수질관리
4.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관리
5. 그 밖에 일상 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마을급수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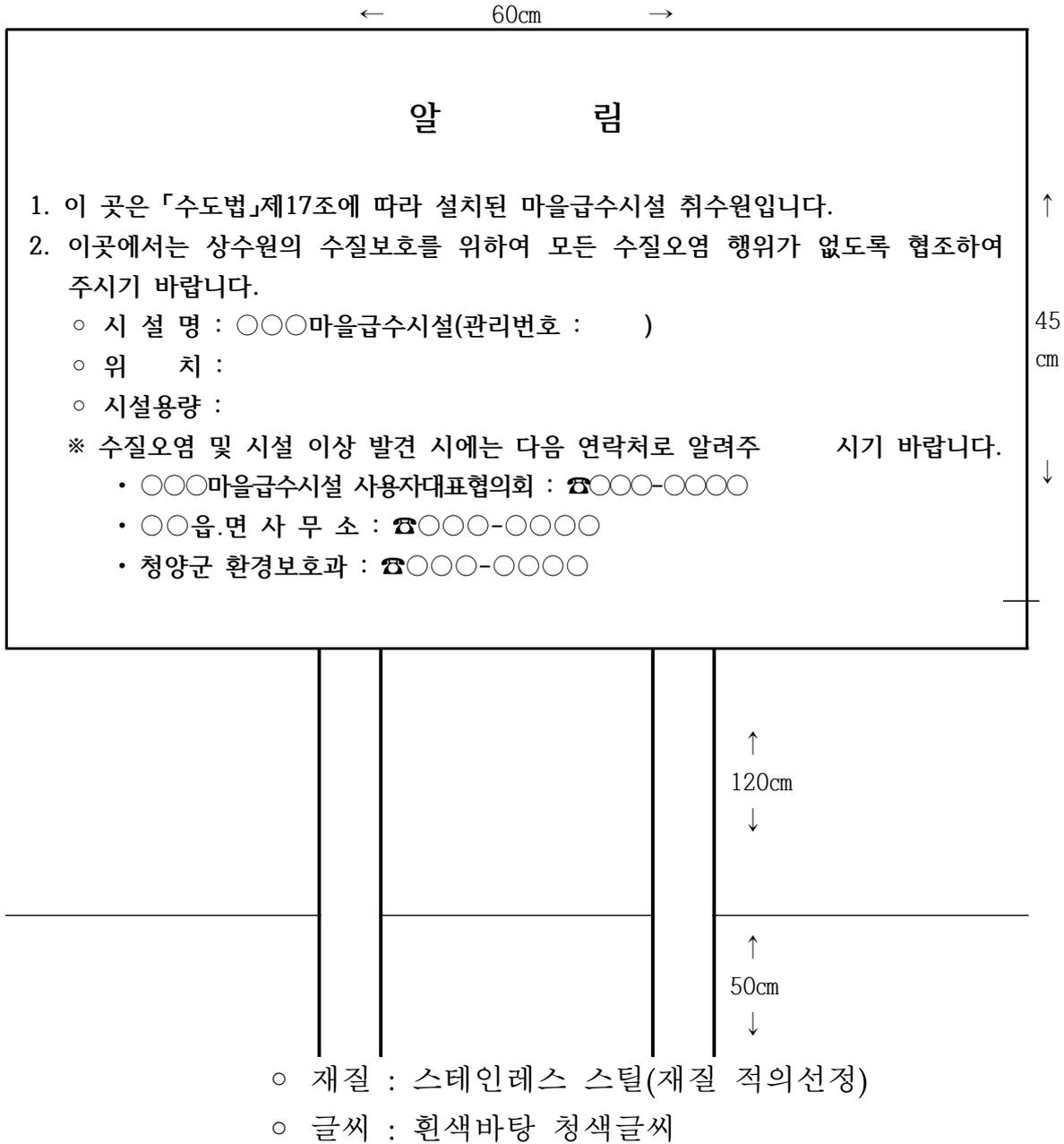
「청양군 상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마을급수시설 안내판 도안 및 규격(제2조제3항 관련)



[별표 2]

○○○마을 소규모급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규약

○○○마을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마을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규약(안)

제1조(명칭) 이 협의회는 ○○○마을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청양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마을 소규모급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위치) 본 협의회는 충청남도 청양군 ○○읍.면 ○○로 ○○(○○리 마을회관)에 둔다.

제4조(구성) 본 협의회는 ○○○마을 소규모급수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세대주로서 협의회 회원명부에 등록된 사람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제5조(회원의 자격) 본 협의회는 회원의 자격은 ○○○마을 소규모급수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세대주로서 ○○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급수해지 등 마을급수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6조(회원의 의무) ① 협의회 회원은 본 규약에서 정한 사항과 협의회 지시 및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대표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수원의 오염행위를 발견한 경우
2. 수돗물이 오염되어 수질이 불량한 경우
3. 상수도 시설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4. 급수 중단사고가 발생한 경우
5. 상수도 관로의 누수를 발견한 경우
6. 옥내급수 관로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7. 그 밖에 마을급수시설 급수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협의회 승인 없이 무단으로 급수공사를 하는 행위
2. 상수원의 오염이 예상되거나 오염시키는 행위
3. 협의회 승인 없이 급수구역 내에서 무단으로 굴착하는 행위
4. 마을급수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5. 그 밖에 마을급수시설관리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제7조(임원의 선임) ①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협의회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 1명
2. 운영위원 1명 이상 2명 이하(수석운영위원 1명 포함)
3. 감사 1명(의결권 없음)
4. 간사 1명(의결권 없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제4호의 간사는 대표자가 지명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제7조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궐위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와 책임) ①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고, 조례 제4조에 따른 마을급수시설 관리업무를 총괄하며, 규칙 제4조의 대표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 임원은 대표자가 제1항의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협의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다만, 총회 또는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협의회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에는 총회와 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총회는 본 협의회 회원으로 구성하고, 임원회는 제7조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③ 총회 및 임원회는 대표자가 소집하며,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운영위원이 소집한다.

④ 대표자는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운영위원의 과반수,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총회 또는 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대표자는 의결권을 가진다. 임원회도 또한 같다.

⑥ 대표자는 총회 및 임원회 개최 시에 청양군.읍.면 관계자 및 상수도 전문가를 배석하게 하거나 마을급수시설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① 대표자는 회의 진행과정과 결과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시에 선출한 회의록 서명인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록 서명인의 선출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회 : 3명(대표자 1명, 운영위원 1명, 회원 1명)
2. 임원회 : 3명(대표자 1명, 운영위원 2명)

② 대표자는 군수 및 관계 공무원.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록을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결사항) ①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 규약의 변경
2. 회원의 부담에 관한 사항
3. 마을급수시설의 관리(시설보완, 시설폐지, 급수구역 변경 등)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소송 및 예산 외의 계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이나 규약에 따라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총회는 다음 사항을 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마을급수시설의 일상관리
2. 가정급수 승인 및 급수공사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관리
5. 그 밖에 법령, 규약 및 총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제13조(사용료 등) ① 협의회는 마을급수시설 관리를 위하여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사용료 : 상수도사용량에 따라 부과 원칙(업종별.사용량에 따라 정액 부과 가능)
2. 변상금 : 수도시설 훼손 및 원수 손실에 따른 원상 복구액 부과
3. 그 밖에 협의회에서 결정한 부담금 등

③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금액.납부기한.납부 장소를 정하여 납기 기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4조(사용료 등의 관리) ① 사용료 등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일로부터 3일을 경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료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때에는 대표자 명의로 예치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료 등의 사용) ① 지출에 있어서는 계약서.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② 예산을 집행한 경우에는 집행한 후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결산) ① 대표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마을급수시설 운영현황 및 사용료 등의 징수.사용내역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위원의

감사결과를 붙여 다음 해 1월 31까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상수도시설 운영현황 및 결산서는 총회 개최일 10일 전까지 감사위원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는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구비서류) 대표자는 마을급수시설 관리를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놓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협의회 규약 및 회의록
2. 협의회 등록에 관한 서류
3. 마을급수시설에 관한 서류(시설이력서, 설계도서 및 시설.장비내역서)
4. 협의회 수입.지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서류
5. 협의회 시설 및 재산의 소유권에 관한 서류
6. 협의회 회원명부
7.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서류

제18조(시설의 폐지) ① 협의회에서 마을급수시설을 폐지하거나 협의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협의회 의결서를 붙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산 승인을 받은 때에는 청산서를 작성하여 협의회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청산한다.

③ 대표자는 제2항에 따른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협의회에서 보관하고 있는 서류 전부를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청양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시행) 이 규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 대표자가 정한다.

부칙

이 규약은 군수가 관리하는 마을급수시설 관리대장에 등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설치(변경)보고서(제3조 관련)

1. 협의회 명칭 : ○○○마을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2. 협의회 설치(변경)일시 :
3. 협의회 위치 : 충남 청양군 읍.면 로(길)
(○○리 마을회관)
4. 협의회 구성 : 협의회원 총 명 (협의회원 명부 붙임)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비고
대표자					
운영위원 (5~10명)					
감 사 (2명)					
간 사					

붙임 : ○○○마을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원 명부 1부. 끝.

20 년 월 일

○○○마을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 ○○○(인)

청 양 군 수 귀하

(붙임)

○○마을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회원명부

수전번호	성 명	주 소	가족수	비 고

(별지 제2호서식)

○○마을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회의개최 결과보고서(제5조 관련)

「청양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협의회 회의개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협의회명칭 : ○○○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2. 개최시기 : 년 월 일(:)
3. 개최장소 :
4. 참석현황 : 총 회원수 - 명, 참석 회원수 - 명
5. 회의안건
○
6. 결의사항
○
7. 그 밖에 사항 :

20 년 월 일

○○○마을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 ○○○ (인)

청 양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마을급수시설사용료 납입고지서(제6조 관련)

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증통지서				
년도		월분		수도사용료
관리번호		업 종		
청양군		읍.면		로(길)
성명		사용량		m ³
사용월	사용료	시설부담 금 손 료	가산금	합 계
합 계				
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				

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증통지서				
년도		월분		수도사용료
관리번호		업 종		
청양군		읍.면		로(길)
성명		사용량		m ³
사용월	사용료	시설부담 금 손 료	가산금	합 계
합 계				
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				

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영수증통지서				
년도		월분		수도사용료
관리번호		업 종		
청양군		읍.면		로(길)
성명		사용량		m ³
사용월	사용료	시설부담 금 손 료	가산금	합 계
합 계				
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
○○○마을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				

(별지 제4호서식)

마을 소규모급수시설 <input type="checkbox"/> 변경 <input type="checkbox"/> 폐지 신청서(제9조)				
신청인	성명			
	주소			
시설명칭				
설치연도			사업비(천원)	
수원	당초			
	변경			
시설용량 (m ³ /일)	구분			
	당초			
	변경			
총인구(명)	계획급수 인구(명)		보급률(%)	
급수량	1일 최대 급수량(m ³ /일)	1일 평균 급수량(m ³ /일)		1일 1명당 급수량(ℓ/일)
사업기간				
변경.폐지 사유				
폐지예정 일				
<p>※ 협의회 총회의결서 붙임</p> <p>「청양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p>○○○마을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 ○ ○ ○ (인)</p>				
청 양 군 수 귀 하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8월 1일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청양군 규칙 제1209호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시사용 신고) ①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일시사용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에 증명 서류를 붙여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배수설비 설치신청) ①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공

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이 내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납입고지서와 함께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 내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4조(공사신청의 취하)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 내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 취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 취하 신청을 접수한 경우라도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공익상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5조(공사비 납부 및 환불)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 내 공사비를 환불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는 공사완료 후 정산 결과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준공일로부터 1개월 이 내 환불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는 군에서 발행하는 납부고

지서에 따르며 군 지정 금융기관에게 10일 이 내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비의 산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른 공사비의 산출은 조달청 구입단가 및 건설표준품셈 등에 따른 설계단가에 따른다.

제7조(공사시공에 따른 책임)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시행에 관하여 다른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7조(사용료 고지 등) ① 하수도 사용료의 납기는 상수도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한다.

②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고지서는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납부 고지서 서식의 예에 따른다.

제8조(사용량의 조정) ①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급수 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체 급수시설에서 급수한량을 합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와 겸용하는 경우의 사용량은 별도 조정한다.

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 하수도로 배출되지 않은 경우의 사용량의 조정은 전 3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 (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함)으로 판단한다.

③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급수중지 처분된 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④ 단독 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연립주택,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단

일양수기로 2가구 이상 사용가구(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의 경우 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을 적용한다. 다만, 평균 사용량이 1m³ 미만인 단수에 대하여는 절상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가구분할 적용신고는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예에 따른다.

⑥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의 심히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정한다.

1.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호별 요금을 계산하고 이를 합한 금액을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 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가구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자료 제출 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자 및 점용자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수 배출량을 조사할 때
2.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를 산정할 때
3.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이의 신청이 있을 때

제10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 산정)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하천수 등 사용자에게 대한 오수 배출량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측기가 설치된 경우

- 가. 양수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
- 나. 자동 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 모타펌프의 시간당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 시간으로 산정(1개월간 사용량 = 단위 시간당 양수능력×1월간 양수시간)
- 다. 자동 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단위 전력량에 대한 양수 능력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1월간 사용량=구경별 단위 시간당 출수량×1월간 전력 사용량)
- 라. 자동 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되었으나 지하수의 부족 등에 따른 모타펌프의 공회전에 따라 과다 전력량 산정이 인정될 경우 상수도급수에 사용되는 공인된 수도계량기에 따른 급수사용량으로 산정
- 마. 계측기의 고장에 따라 제1호가목에 따라 배출량을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전 3개월간의 평균 월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의 조정량(목욕업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게 한함)으로 인정.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넘을 수 없다.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단위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1월간 사용량=구경별 단위 시간당 출수량×1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않는 수동 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체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 시설,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따른 배출량 인정이 크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청양군의 1인당 평균 급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

제11조(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 및 방법) 조례 제1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는 특별한 경우(군수와 협의에 따라 부과)를 제외하고 건축물 등의 인가·허가시 부과하며 납부시기 및 방법은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제출시(협의시)까지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 징수되므로 체납액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전소유자로부터 체납액이 승계된다.

제12조(원인자부담금 등 분할납부) 조례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등을 분할납부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원인자부담금등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감면 등) ① 조례 제1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6호 및 7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등은 50%를 감면한다.

② 조례 제1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감면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감면대상자의 범위, 감면금액 등 감면 방법은 군 실정에 맞도록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 조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 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연체금과 납입 독촉) 조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 등과 동시에 발급하고 별도 알리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의 경우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5조(과오납금의 총당 및 환불) ① 군수는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과오납입, 이중납입, 납부후 그 부과 취소, 변경 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에 총당하고 그 남은 금액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그 금액, 이유, 지급 절차, 지급 장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알려야 하며, 또한 충당한 경우에는 충당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불은 당해년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금된 회계년도의 출납 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오납금된 회계년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하며, 과오납금된 회계년도의 출납 폐쇄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당해 회계년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제16조(증표) 하수도업무 담당공무원은 출장업무 수행 시 공무원증이나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17조(위탁 징수) ①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징수금을 다른 회계 또는 사설 상수도 공급자에게 위탁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 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 비용은 상호 협약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행한 처분은 이 규칙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6호서식]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충당) 통지서							처리기한	
							즉 시	
관리자성명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과오납액	월 분	정당납부 (납입)액	기 납 부 (납입)액		과오납액	환불이자		
						일 자	금 액	
	과 오 납 합계금액				충당후잔액 (환 불 액)			
충당금액	월 분	미납금액	충당금액		과 오 납 된 사 유			
	충당금액				충당후의 미 납 액			
<p>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발생하여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 양 군 수</p>								

[별지 제8호서식]

(전 면)

(후 면)

8cm	
NO. _____ <div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신 분 증 명 서</div> 소속 : _____ 직급 : _____ 성명 : _____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사 진
위 사람은 청양군 하수도업무담당공무원임을 증명함.	
20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주”
이 공무원은 청양군 공공하수도 설비 공사의 조사, 사용개시, 오수 배출량, 하수도사용 및 점용, 배수중지 등 제반관계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용가의 자택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의뢰할 수 있음.

6cm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8월 1일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청양군 규칙 제1210호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칙은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
례”라 한다)”를 “규칙은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
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조례”를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
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사용허가등 신청은”을 “사용허가 등 신고는”
으로, “1월전”을 “1개월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청에”를 “신고에”
로, “허가 또는 수리”를 “허가”로, “부하여 별지 제2호의 허가서를 교부하고”
를 “붙여 별지 제2호서식을 발급하고”로, “비치하여야”를 “갖춰 두어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표2””를 ““별표 2””로, “각호”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이내에”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지한다”를 “알린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초과할”을 “넘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현저히”를 “크게”로, “당해년도”를 “당해 연도”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읍·면장”을 “읍장·면장”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징수가능”을 “징수 가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읍면장”를 “읍장·면장”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폐지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8월 1일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청양군 규칙 제1211호

청양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청양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8월 1일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청양군 규칙 제1212호

청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시중지 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재무과장에게 일정기간 동안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일시 보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지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재무과장에게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정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재무과장에게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칙은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 관계 법령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지방세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청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고충민원

제4조(고충민원서류의 접수) 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고충민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기한 연장통지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한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고충민원 처리안내) 민원인이 납세자보호관과 상담 후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예정기한, 처리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7조(세무부서 의견조회)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

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별지 제4호서식)에 고충민원서류사본을 붙여 재무과장에게 의견을 알아보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재무과장은 의견서를 작성한 후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사본을 붙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충민원처리결과(의견) 통보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열람)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을 확인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등의 직원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일
2. 세무부서 등이 가지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이 가진 장부·서류·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을 확인하는 일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재무과장에게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재무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처리결과 통지)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제8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열람) 및 제9조(증빙자료의 수집)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힌 고충민원처리결과통지(통보)서(별지 제7호서식)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고충민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요구서(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재무과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는 고충민원심의결과통보서(별지 제9호서식)에 의결서를 붙여 재무과장에게 통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재무과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여부를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서(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고충민원결과통지서(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제10조(조사기간 연장신청)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면 조사기간연장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에 관련서류 등을 붙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연장신청 의견청취 등) 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 연

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재무과장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재무과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 의견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납세자보호관에게 알려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기간 연장 여부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조사기간연장통보서(별지 제14호서식)를 재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알린다.

② 재무과장은 조사기간연장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처리결과통보서(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해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제13조(연기신청 의견청취 등) ① 세무조사연기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재무과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재무과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의견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알려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4조(연기신청결정의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14조에 따른 조사연기 신청결과통보서(별지 제18호서식)를 재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알린다.

② 재무과장은 조사연기신청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처리결과통보서(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해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알려야한다.

제4장 권리보호 요청

제15조(권리보호요청의 접수) ①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권리보호요청신청서(별지 제20호서식)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21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6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① 권리보호요청은 7일(초일은 포함하되, 공휴일·토요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현장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로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7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17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절차) ①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제18조(권리보호요청 처리 협조) 및 제19조(사실관계 확인)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힌 권리보호요청처리결과통지(통보)서(별지 제23호서식)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조례 제2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요구서(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 재무과장에게 시정을 요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재무과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여부를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서(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알린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재무과장이 시정요구를 받아들이는 경우 권리보호요청처리결과통지서(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여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알린다.

제18조(권리보호요청 처리 협조)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과장의 의견 또는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서(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하여 재무과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재무과장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자료요청)회보서(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의견과 자료를 지체 없이 회신하여 권리보호요청이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사실관계 확인)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 요청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납세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지방세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된 조사 및 재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조례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이하 “위반된 조사 등”이라 한다)임을 주장하는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등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사전통지서
2. 세무조사결과통지서
3. 조사계획서
4. 조사이력사항
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② 재무과장은 제1항에 따른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관련 자료요구서(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보내야 한다.

-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④ 납세자보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일시중지요청서(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그에 대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재무과장에게 조사 착수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무과장은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하여야 한다.
-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후 납세자가 위반된 조사 등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가 보여 주는 종전의 세무조사사전통지서 등 관련 서류, 정황 및 지방세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일시중지요청서(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그에 대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재무과장에게 해당 세목에 대한 조사의 일시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재무과장은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 ⑥ 납세자보호관은 그 결과 및 조치사항을 제18조에 따라 납세자에게 알려야 하고 처리결과를 재무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⑦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 세수일실·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로서 재무과장의 의견을 들은 결과 조사 착수 또는 조사 진행이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일시 중지를 요청하지 않는다.
- ⑧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가 일시 중지된 경우 중지된 기간만큼 조사기간이 연장된다.

제5장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제21조(기한의 연장) ① 조례 제34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별지 제31호서식(납부기한 연장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재무과장에게 접수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기한만료 3일 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의 연장 신청사실을 통보받은 재무과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납부기한 연장 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해당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을 알려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5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무과장에게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의 연장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재무과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2조(가산세의 감면) ① 가산세 감면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재무과장에게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가산세 감면신청 접수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가산세 감면신청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재무과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

게 의견을 알려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7조에 따라 가산세 감면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무과장에게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가산세 감면의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재무과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7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결과(승인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3조(징수유예 등) ①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재무과장에게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징수유예 신청 접수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신청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재무과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알려야 한다. 다만, 재무과장은 「지방세징수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105조제3항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알린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9조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무과장에게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승인 결

정을 통보받은 재무과장은 납세담보를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 보호관에게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9조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납세담보의 제공을 위하여 기한 내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 받은 후 지체 없이 알린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충민원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고충내용	※ 작성할 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청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양군수 귀하

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 계
	주소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고충민원 처리기한 연장통지서**

「청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 규칙」 제5조에 따라, 귀하(귀 법인)가 ○○.○○.○○ 제출한 고충민원의 처리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당초처리기간		처리에정기한
기한연장사유				

끝.

청 양 군 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행정기관명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

「청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충민원이 제기되어 귀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니 ○○.○○.○○까지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당해 고충의 내용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시정하고 그 결과를 ○○.○○.○○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고 충 내 용				

붙임 고충민원서 사본 1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고충민원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

「청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일자	. . .	처리일자	. . .
고충내용 (요약)				
00과 의견	검토의견			
	처리결과 (직권시정 하였을 경우)			

붙임 고충민원서류 사본 1부.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행정기관명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아래 민원인으로부터 고충민원이 제기되어 「청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귀 부서의 과세자료에 대하여 열람·제출을 요구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신청일자	.	.
고 충 내 용				
요 구 자 료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

귀하(귀 법인)가 ○○.○○.○○ 제출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청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안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민원내용				
처리내용				

끝.

청 양 군 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행정기관명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 검토(의결)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청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규정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통보하오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고충내용				
시정요구 내용				

(붙임: 고충민원의결서)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행정기관명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

「청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거 아래의 고충민원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고충민원 내용				
의결 내용				

붙임 의결서 1부.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m²)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고충민원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

「청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권리보호요청 사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안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고충내용				
처 리 결 과	수용여부	여 / 부		
	처리사유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제출

「청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 내용	조사대상 세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행정기관명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접수 사실 통보

「청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접수 사실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기간연장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붙임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1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m²)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 송부

「청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세무조사 연장 신청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검토 의견	연장 여부	
	사유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행정기관명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통보

「청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 납세자가 신청한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해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신청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결정사항	연장 여부			
	사유			
	연장된 조사기간	~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처리결과 통보

「청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 납세자가 신청한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해 그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처리 사항	연장 여부	
	사유	
	연장된 조사기간	~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행정기관명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 접수 통지

「청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 접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접 수 사 항	당초 조사기간	
	연기 신청기간	
	연기 신청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에 따른 의견 제출

「청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연기신청 기간				
○○과 의견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행정기관명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보서

「청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신청내용	당초조사기간			
	연기신청기간			
	연기신청사유			
결정사항	연기여부			
	연기된 조사기간			
	결정사유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처리결과 통보서

「청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신청내용	당초조사기간			
	연기신청기간			
	연기신청사유			
처리결과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안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권리보호 대상	① 요청기관	② 세무조사	③ 세정행정	④ 체납처분
⑤ 권리보호 요청내용	※ 작성할 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청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양군수 귀하

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생년월일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⑥ 첨부서류	1. 예고 통지서 등 주무서서로부터 통지 받은 서류 2. 권리보호요청 내용을 증명하거나 보완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297mm×210mm(백상지 80g/㎡)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 연장통지**

귀하가 ○○.○○.○○ 제출한 권리보호요청 신청에 대하여 「청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규정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 리 기 간 연 장	기간연장	당초기간 :	연장기간 :
	연장 사유		

끝.

청 양 군 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

귀하가 ○○.○○.○○ 제출한 권리보호요청 신청서에 대하여 「청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리내용				
처리사유				

끝.

청 양 군 수 직 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행정기관명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청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규정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통보하오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납세자 권리침해 행위				
시정요구 내용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

「청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권리보호요청 사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안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 리 결 과	수용여부	여 / 부		
	처리사유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

「청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권리보호요청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리결과				
처리사유				

끝.

청 양 군 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행정기관명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서

「청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어 귀 부서의 의견 및 자료를 요청하니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안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필요한 자료 명세			

붙임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1부.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청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규정에 따라 아래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송부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안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내용		
○○과 검토의견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m²)]

행정기관명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세무조사 관련 자료요구서**

「청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규정에 따라 아래의 세무조사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오니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필요한 자료 명세	1 조사대상세목	
	2 조사대상기간	
	3 조 사 사 유	
	4 기 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행정기관명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

「청양군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규정」 제20조제4항(제5항)에 규정에 따라 아래 세무조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니 세무조사를 일시중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조사기간			조사대상 과세년도	
조사반			조사유형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청사유				
세무조사 중지기간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행정기관명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 접수 통보

「청양군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내용	기한연장 대상			
	당초 기한 년 월 일까지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년 월 일까지		
	연장 신청 사유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m²)

행정기관명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 신청 접수 통보

「청양군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방세 납부기한연장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지방세의 내용

주요세목	과세물건(대상)	납부기한	세액	신청금액
연장 받으려는 기한	년 월 일까지			
연장 신청 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10mm×297mm(백상지 80g/㎡)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 통보

「청양군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을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의견	기한연장 대상	
	결정사유	
	연장 기한	년 월 일 까지(일간)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m²)

행정기관명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 기한연장 승인 여부 통지

「청양군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귀하(귀 법인)의 지방세 ()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통지내역	기한연장 대상			
	당초기한			
	승인여부			
	연장 기한	년	월	일 까지(일간)
	승인(불승인)사유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 통보

「청양군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의견	기한연장 대상			
	결정사유			
	연장 기한	년	월	일 까지(일간)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행정기관명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신청 접수 통보

「청양군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신청 내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안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신청 내용	사유 발생일		
	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과 부과연월	세	년 월
	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가산세	원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구체적으로 작성하며,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신청에 대한 의견서 제출

「청양군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감면 여부 의견			
감면(감면불가) 사유			
감면 승인할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가산세	원
감면할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과 부과내역		세	년도 월 원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행정기관명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의 결과(승인 여부) 통보

「청양군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의 결과(승인 여부)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감면 여부(승인 여부)				
감면(감면불가) 사유				
감면 승인된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가산세	원	
감면된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과 부과내역		세	년도	월 원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의 처리 결과 통보

「청양군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가산세의 감면 등의 승인에 따른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감면 처리된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가산세			원
감면된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과 부과내역	세	년도	월	원
처리연월일	년	월	일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행정기관명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 징수유예등 신청 접수 통보
 [] 체납처분유예

「청양군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방세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안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세목	과세연도	과세번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신청 내용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사유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을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납부기한 및 분납금액								
	횟수	연도	세목	납부기한	분납금액 (A+B)	지방세(A)	가산금(B)		
	1회								
	2회								
	3회								

붙임 신청서 사본 1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 / 공개 구분
 편주소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 목 [] 징수유예등 신청에 대한 의견 통보
[] 체납처분유예

「청양군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안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 여부 의견		
승인(기각) 사유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행정기관명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처리 결과 통보

「○○○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승인에 따른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안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처리된 세목과 세액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처리연월일	년 월 일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청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8월 1일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청양군 규칙 제1213호

청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청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을 “청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청양군 지급조례”를 “「청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의 부 또는 모는 장학생 선발신청서(별지 제 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본인, 읍장·면장, 학교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군수에게 장학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제3항 전단 중 “제2항 신청”을 “제2항의 신청서 제출”로, “보아”를 “간주하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재선발은 하지 아니한다”를 “재선발은 하지 않는다”로 한다.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중복지원의 방지) 군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에 의거 장학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다른 기관에게 장학금 중복 수혜여부에 관하여 조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중전의 제4조) 중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하며 장학생”을 “장학생”으로, “보호자가 직접 수령”을 “부모에게 직접 지급”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 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학생 추천서

1. 주 소			
2. 학 교	(고등, 대학교)	(학년/과)	
3. 성 명 (한글)	(한자)	(남 / 여)	
4. 생 년 월 일	년	월	일 (만 세)
5. 학 업 성 적 (이 전 학 기)	점	(석차)	/
6. 학 습 태 도			
7. 장학금 수혜여부	(원)		

위 사람은 본교 학생으로서 새마을장학생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기에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또는 서명

청양군수 귀하

장학금 지급 신청서

1. 주 소			
2. 학 교	(고등, 대학교)	(학년 / 과)	
3. 성 명 (한 글)	(한자)		(남 / 여)
4. 생 년 월 일	년	월	일 (만 세)

본인은 청양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된 바 이에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또는 서명

청양군수 귀하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8월 1일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청양군 규칙 제1214호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의안의 심사 및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심사·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동의를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 안건을 회부할 때에는 미리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제20조의2제1항 본문 중 “의장은 의원발의”을 “의원발의”로, “의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을 “의안은”으로, “소관위원회의 의사일 정으로 상정”을 “상정”으로 한다.

제20조의3을 삭제한다.

제61조제1항 중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5조제1항 중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예결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그 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8월 1일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청양군 규칙 제1215호

청양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청양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양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청양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청양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청양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의료원장”을 “청양군 보건의료원장”으로, “기재하고”를 “적어 넣고”로, “군수”를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2조의 따른”으로, “별지 제1호”를 “별지제1호”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별지 제2호”를 “별지제2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및 업무범위,”를 “, 업무범위 및”으로, “기재하여야”를 “적어 넣어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당초”를 “이전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늦어도 계약해지일”을 “계약해지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아니하거”를 “않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결함”을 “흠”으로 한다.

제6조 중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대행비”를 “제2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청양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신청서”를 “청양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청양군보건의료원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대행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청양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로 하고, 신청인 (인)을 신청인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목 “청양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계약서”를 “청양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계약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청양군보건의료원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대행에관한조례 제2조”를 “「청양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로 하고, 같은 서식 제3항 중 “청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하며, 같은 서식 중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을 “「청양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계약서

「청양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이하 “갑”이라 한다)과 업무대행자(이하 “을”이라 한다)와의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갑 : 청양군수

을 :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제2조(대행업무) 본 계약에 의하여 “을”이 대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2.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업무대행경비) 업무대행 총 경비는 월 원(년 원)으로 한다.

제5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① “갑”은 “을”의 업무대행경비를 매월 말일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업무대행경비 지급 시에는 매월 소득세법 규정에 의거 소득세 및 주민세 등을 원천징수 한다.

제6조(의무) ① “갑”은 “을”의 보건의료행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을”은 의료법 등이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을”의 업무대행일 및 업무대행시간은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한다.

청양군 귀농인·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8월 1일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청양군 규칙 제1216호

청양군 귀농인·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귀농인·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자격) 지원자격은 「청양군 귀농인·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귀농인·귀촌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 ① 조례 제9조, 제10조, 제11조와 관련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훈련비 지원 사업
2. 귀농인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
3. 지역주민 융화합 프로그램 지원 사업
4.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 사업

제4조(지원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귀농인·귀촌인으로부터 사업신청서가 접수되면

타당성, 현지어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동일 사업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5조(교육훈련비 지원) 조례 제9조제2항의 교육훈련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현장실습교육비 지원

가. 지원대상: 군수가 지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선도농가에서 현장실습을 한 귀농연수생

나. 지원금액: 연수생 월80만원 이내

다. 신청서식: 별지 제1호서식

2. 귀농·귀촌학교, 영농기초기술 교육

가. 지원대상: 예비 귀농인·귀촌인 또는 초보 귀농인·귀촌인

나. 지원금액: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

다. 신청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제6조(사업의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인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원

가. 지원대상: 귀농교육을 최소 30시간 이상 이수한 귀농인

나. 지원금액: 구입 가격의 50%를 지원하되, 보조금은 최대 500만원 이내

다. 신청서식: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1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부

2) 귀농교육 이수증 1부

3)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2. 지역주민 융화합 프로그램 지원

가. 지원대상: 귀농·귀촌 전입시점에서 1년 이내의 귀농인·귀촌인

나. 지원금액: 세대당 50만원 이내

다. 신청서식: 별지 제5호서식,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1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제7조(빈집수리비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 귀농 전입시점에서 1년 이내의 귀농인

2. 지원금액: 세대당 500만원 이내

3. 지원방법 : 별지 제6호서식

제8조(사후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은 지원연도부터 5년으로 하며, 군수는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9조(지원금의 회수)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원금의 회수는 다음과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및 처분한다.

제10조(준용) 이 규칙으로 정하지 않은 지원금 관리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귀농연수생용 현장실습교육 추진 계획서

연수개요

시군명	귀농연수생		선도농가 이름(예상)	현장실습기간 (희망기간)	희망 연수작목
	이름	귀농연월			

귀농동기(목적)

귀농 현장실습교육을 통해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3가지 이상)

【농업기술, 사업화기술, 사업마인드, 관계강화 등】

-
-
-
-

선도농가에게 바라는 점

(별지 제2호서식)

청양군 제00기 귀농·귀촌학교 입학원서

접수번호		생년월일			
지원자	성명	(한자)			
	현주소				
	전화번호	(주택)	결혼여부	기혼미혼	사진
		(휴대폰)			
	연고지유무	유(), 무	이메일		
최종학력	년 월	학교졸업(전공:)			
주요경력					
① 기간		② 근무처		③ 직급	
④ 기타					
귀농 후 영농계획					
희망하는 작목	①경종() ②축산() ③과수() ④기타()				
영농기반 유무 (㎡)	①있음 (전: 답: 과수: 기타:) ②없음 (계획: 구입, 임차, 기타)				
농업관련교육 이수 내용(수료증 사본첨부)					
○ 귀농교육			○ 농업관련교육		
- 교육명 :			- 교육명 :		
- 교육기간 :			- 교육기간 :		
- 교육내용 :			- 교육내용 :		
위 본인은 청양군 귀농·귀촌학교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붙임 : 자기소개서 1부 농업관련 교육 이수자료 등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input type="checkbox"/> 관련된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관련된 본인의 고유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관련된 본인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청 양 군 수 귀 하					

귀농인 농업생산기반시설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명(세대주)		생년 월일		전화 번호	
	주 소	충남 청양군 읍·면 로				
	귀 농 일 (전입일)	20 . .	영농 종사 경력	년 월	귀농 교육 시간	
신청 내용	사업 기종명					
	사업비(원)	계	보조금	자부담		
신청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청양군수 귀하						
민원인 제출서류	1. 귀농교육 이수증					수수료 없음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 <input type="checkbox"/> 여권 <input type="checkbox"/> 외국인등록 <input type="checkbox"/> 운전면허) 번호 :						

(별지 제5호서식)

지역주민 융화합 프로그램 지원 사업 신청서

마을명	청양군 읍·면	길(로)	
이장성명		연락처	
귀농인·귀촌인 성명(세대주)		연락처	
귀농·귀촌 일자		작목	
귀농·귀촌 전 주소			
귀농·귀촌 후 주소	청양군	읍·면	길(로)
사업내용	(예시) 1) 현수막제작 2) 음식물 준비 등		

※ 첨부서류 : 주민등록초본1부(주소이력포함), 주민등록등본1부

년 월 일
이장 _____(인)

청양군수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별지 제6호서식)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 신청서

신청자	성명 (세대주)		생년 월일	전화 번호	
	주소	귀농 전			
		귀농 후			
	영농경력	년	월	귀농 교육시간	
가족상황					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전 m ² , 답 m ²) 기타 - 저장시설 : - 농 기 계 :			
사업비 (천원)	합계	보조금			자담
		소계	국비	도비	
본인은 농가주택 빈집수리비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마을대표				(서명 또는 인) (인)	
청 양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초본 각1부. 2. 부동산매매계약서(또는 임대차 계약서) 1부. 3. 건축물대장 및 농업경영체등록증 각 1부. 4. 기타 증빙자료					

귀농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카드

사 업 명				
사업대상자	청양군	읍.면	길(로)	
성 명		공 급 업 체		
기 종 명		기 대 번 호		
규격(형식명)		구입년월일		
기대사진	<i>반드시 해당 농가 입회하에 사진촬영 (농가와 사진촬영시만 인정)</i>			
년월일	관리상태	관리상황확인자		비고
		직	성명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관리카드

사업명					
사업비 (천원)	계	국고	도비	군비	자담
농가주소	청양군 읍·면 길(로)				
사업량		수리완료일			
성명		연락처			
현장전경					
년월일	관리상태	관리상황 확인자		비고	
		직	성명		

청양군행정자료실설치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8년 8월 1일

청 양 군 수 김 돈 곤 인

청양군 훈령 제290호

청양군행정자료실설치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

청양군행정자료실설치운영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양군행정자료실설치운영규정” 을 “청양군 행정자료실 운영
규정” 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양군 행정자료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관장) 행정자료실(이하 “자료실” 이라 한다)은 청양군
(이하 “군” 이라 한다) 청사 내에 두며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고 행
정지원과장이 자료실장이 된다.

제3조(기능) 자료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 자료의 수집 및 보존

2. 자료의 열람 및 대출
3. 외부 간행물의 수납 및 배가
4. 기타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자료의 비치) 자료실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하여 갖춰 둔다.

1. 군정 간행물 및 시청각자료
2. 외부기관의 정기간행물
3. 직원 구비신청 도서
4. 기타 소장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제5조(자료의 수집 방법) 자료실에 갖춰 둘 자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집한다.

1. 간행물을 생산한 부서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에 따라 1부를 자료실에 납본한다.
2. 각 부서는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 중 소장가치가 있는 것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부를 자료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군정에 도움이 되는 민간의 자료는 기증 등의 방식을 통해 적극 수집한다.

제6조(자료의 폐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는 자료실장이 폐기 처분할 수 있다.

1. 시간 경과에 따라 보관 및 이용가치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자료

3. 새로운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자료

제7조(열람) 군 소속 공무원 및 군내 주민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열람할 수 있다. 단 자료 발행 부서로부터 열람제한 요구가 있거나, 열람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그 열람을 거부할 수 있다.

제8조(대출) ① 자료의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자에 한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2. 군내 주민

3. 기타 자료실장이 인정하는 자

② 대출은 1인당 도서자료의 경우 5권 이내, 시청각자료의 경우 3종 이내로 한다.

③ 대출기간은 1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한 차례만 7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대출된 자료는 기한 전이라도 반납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자료를 대출하거나 반납할 때에는 자료실 자료 대출·반납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해야 한다.

제9조(대출제한)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시중에서 구입이 불가능한 자료

2.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자료

3. 기타 대출제한이 필요하다고 자료실장이 인정하는 자료

제10조(반납) ① 대출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반납기간 전에 그 회수를 요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반납 독촉을 하여야 한다.

② 자료를 대출받은 자가 반납 독촉을 받았거나 공무원이 전출 및 퇴직·정직·휴직하게 될 경우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 독촉 후 일주일이 경과해도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분실한 것으로 보고 제11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자료의 변상) 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한 자는 변상책임을 진다. 변상은 동일 자료나 금전으로 한다. 다만, 금전으로 변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자료실 자료 대출·반납대장

_____년

일련 번호	소속	대출자	자료명	자료 유형	대출일자		반납일자		확인
					월	일	월	일	